

영천시 ↔ 대구대학교

# 관·학 협력 업무협약서(MOU)

영천시와 대구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대구대학교 소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개발사업 발굴, 민간 투자 유치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각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## 제3조(협력분야 및 내용)

양 기관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 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1.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 및 민간투자 유치
2.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적 활용 방안 마련
3.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개발·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4. 지역 특화 산업 연계 교육·연구시설 조성 및 전문 인재 양성
5. 대학은 부지 제공 및 사업 추진 협조, 민간사업자 참여 협력
6. 시는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지원
7. 구체적인 사업 추진, 비용·수익 분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실시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확정

## 제4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기간 만료 전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.

### 제5조(변경 및 해지)

- ①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.
  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
  2. 일방이 협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### 제6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협약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### 제7조(기타)

-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행정 지침에 따른다.
- ②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별도의 계약 또는 실시협약에 따른다.
- ③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3월 30일



시장 최기문

최기문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총장 박순진

박순진